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일 시 : 2023. 7. 25.(화) 14:00
- ▣ 장 소 : 문화재청 1동 906호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2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3	사적 「서울 독립문」 주변 현상변경	
4	사적 「익산 나마위성당」 주변 현상변경	
5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재심의)	
6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사항】

7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관계 문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8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9	「고성 왕곡마을 정미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0	「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1	「인천 조흥상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12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복원정비(안) 검토	

【보고사항】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14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심 의 사 항

1.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5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81.9.25.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통신동)
- (3) 세부내용 : 허용기준 조정
 - 관련규정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5067호, 2021. 11. 4.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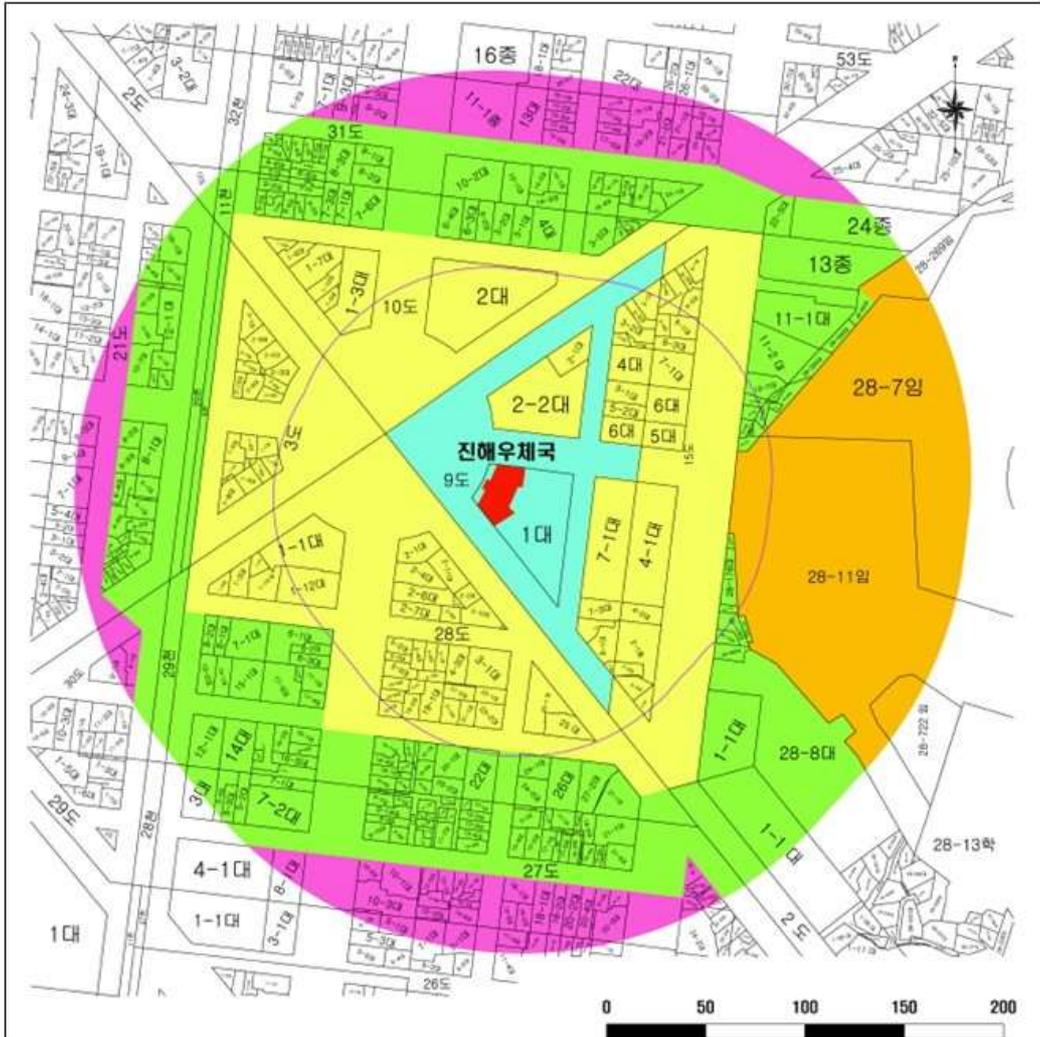
제2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23. 5. 24. ~ 6. 13. (21일간/창원시 홈페이지 등)

○ 현행 <문화재청 고시 제2016-139호 / 2016.12.26.>



1구역-노란색, 2구역-초록색, 3구역-보라색, 4구역-주황색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보호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24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4구역 제외)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24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4구역 제외)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사항 요약

- 1구역은 기존 1구역 그대로 설정함
- 2구역은 기존 구역에서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일부 지역을 추가 설정함
- 3구역은 2구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200m까지로 설정함
- 4구역은 3구역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로 설정함

2.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경남 창원시 소재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원 진해우체국」주변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원시 진해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창원 진해우체국」('81.9.25.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통신동)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평안동 2번지
 - ※ 허용기준 : 1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이하)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m
 - 세부내용 :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대지면적 : 1,924.0000 m²
 - 건축면적 : 1,252.2894 m²
 - 연면적 : 3,441.4388 m²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 16.5m (전면 10.3m)

3. 사적 「서울 독립문」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독립문」 및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서대문독립페스타'를 개최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독립문」 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일대에서 '서대문독립페스타'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독립문」 ('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88.02.27.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외 6필지 일원
 - ※ 허용기준 :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세부내용 : 2023년 서대문독립페스타 개최를 위한 무대 등 가설물 설치 등
 - 설치기간 : 2023. 8. 10. ~ 8. 15. (개최기간 2023. 8. 12. ~ 8. 15.(4일간))
 - 독립문 메인무대 (개막식, 패션쇼 등)
 - 무대규모 : 15m × 9.1m, 높이 1m 무대단
 - 음향설치탑 : 8m × 6m, 높이 8m 철물트러스 구조 2조
 - 체험부스 : 역사관 및 독립공원 내 가설물(몽골텐트, 캐노피텐트) 55개동
 - 주요 프로그램(안)
 - 축하공연 : 개막 축하공연, 독립문런웨이(패션쇼), 오케스트라공연
 - 참여 프로그램 : 걷기대회, 독립군 전투체험 등
 - 체험 프로그램 : 독립 체험부스 (40여개 단체)
 - 전시 프로그램 : 광복의 그날 특별전, 독립운동가 인물 전시

4. 사적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익산 나바위성당」 내에 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나바위성당」 보호구역에 성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익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익산 나바위성당」('81.9.25.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화산리)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전남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6,7,8,9,10,11번지
 - ※ 보호구역임
 - ※ 이격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63m 이격
 - 세부내용 :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 용도 :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생(휴게음식점)
 - 대지면적 : 4,479 m²
 - 건축면적 : 1,409.76 m²
 - 연면적 : 2,481.63 m²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하1층, 지상2층 / 9.52m
 - ※ 기존 피정의 집 철거는 향후 계획으로 금회 현상변경 대상 제외

5.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변경(재심의)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는 현상변경 허가에 대해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에 음악종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변경된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0.25.) : 부결
 - 사유 : 음악종 구조물은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22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2.12.06.) : 조건부가결
 - 사유 : 색깔 등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추진
 - '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3.06.27.) : 보류
 - 사유 : 문화재와 어울리는 형태로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대구 계산동성당」('81.9.25. 지정)
 -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10 (계산동2가 71-1외4필지)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대구 중구 서성로 10(계산동2가 71)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9m이격
 - 세부내용 : 음악종 구조물 설치
 - 위치 : 파고라 철거 후 설치
 - 형태 및 규모

(단위: m)

	A안	B안	C안
형태	성당 측량 형상화	종탑 형상화	도시 환경 조형물
규모(m)	7.2 × 7.2 × (H)4.8~6.3	7.2 × 7.2 × (H)7.8	7.2 × 7.2 × (H)6~7.5

※ 이전 심의 자료

	‘22. 10. (부결)	‘22. 12.(조건부가결)	‘23.6.(보류)
위치	파고라 철거 후 설치	역사관 옥상 위	파고라 철거 후 설치
형태	옛 사제관 형상화	옛 사제관 형상화	-
규모	7.2m × 7.2m × H 7.9m	5.7m × 5.7m × H 4.5m (설치 후 최고높이 11.64m)	7.2m × 7.2m × H 7.8m

6.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소재 「호열자병예방주의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5.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호열자병 예방주의서	1건	14.8×21.4	1902년	○○○○ ○○○	○○○○ ○○○ ○○○ ○○○○○ ○○○

(2) 추진경과

- ('21.3월~'21.10월) :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호열자병예방주의서」 포함 총 13건을 등록가치가 있는 A등급으로 선정
- ('22.4.21.) : 근현대문화유산 위생보건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추진 계획 알림 (문화재청 → 충북도청)
- ('22.11.8.) : 문화재 등록 신청(충북도청 → 문화재청)
- ('23.4.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5.23.) :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가결'

(3) 등록예고 : '23.6.15.~7.14.(30일간) * 의견 없음

검 토 사 항

7.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관계 문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재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1년도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분야 목록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차 ’22.2.3. / 2차 ’23.6.7.)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조미수호통상 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	15건	23.2 × 17 등	1882~1883 추정	국유	○○○○○ ○○○○○○○ ○○○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월~’21.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조미수호통상조약 협상 및 비준 관계 문서」 포함 총 39건을 등록가치가 있는 A등급으로 선정
- (’22.2.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6.7.)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 조사 실시

8.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 소재 「미사일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미사일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10.14.)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5.25.)를 실시하였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미사일록	1건	28.5 × 23	1896~1897 추정	○○○ ○○○○○○○	○○○ ○○○ ○○○ ○○○ ○○○ ○○○○○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월~'21.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2.10.14.)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 → 문화재청)
- ('23.5.2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9. 「고성 왕곡마을 정미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소재 「고성 왕곡마을 정미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6.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4.13.)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고성군수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고성 왕곡마을 정미소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473-1
- 소유자 : 강원도 고성군
- 수량 : 건물 1동
- 건립시기 : 1968년
- 구조 및 규모 : 목조, 84.195㎡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2.6.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강원도 → 문화재청)
- ('23.4.13.)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4.21.) : 현지조사에 따른 보완 요청(문화재청 → 고성군)
 - * 정미소 내부 도정시설에 대한 사용 이력(교체여부 등) 및 정미소의 본래기능을 유지하는 구체적 활용계획 보완 요청
- ('23.4.27.) : 보완의견 통보(고성군 → 문화재청) * 기제출 자료 외 보완의견 없음

10. 「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신원면 소재 「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8.1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2.5.10.)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거창군수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거창사건 학살 관련 유지
 - 수량 및 면적: 청연마을 희생장소 등 5필지(3,414㎡)

신청대상	수량	면적			소재지	소유자
		당초	조정	최종		
청연마을 희생장소	1개소	877㎡	537㎡	537㎡	신원면 덕산리 217-12	거창군
탄량골 희생장소	1개소	2,700㎡	150㎡	150㎡	신원면 대현리 551	거창군
		-	660㎡	-	신원면 대현리 1575	국토교통부
		-	306㎡	-	신원면 대현리 1575-21	국토교통부
박산골 희생장소	1개소	4,093㎡	1,164㎡	1,164㎡	신원면 과정리 산66-6	거창군
		122㎡	-	-	신원면 과정리 258	거창군
박산합동묘역	위령비 1기, 묘 3기 (남/여/소아)	1,115㎡	1,087㎡	1,087㎡	신원면 과정리 산66-4	거창군
		3,588㎡	476㎡	476㎡	신원면 과정리 산66-8	거창군
		2,074㎡	-	-	신원면 대현리 산63-9	거창군
계		14,569㎡	4,380㎡	3,414㎡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등록구역 중 일부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신청내용 변경
 - * 변경내용: 당초 신청면적 14,569㎡ →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정 신청면적 4,380㎡ → **최종 신청면적 3,414㎡**
 - * 변경사유: '탄량골 희생장소' 구역 일부 소유자(국토교통부) 비동의

- 구조: 희생장소, 합동묘역, 위령비
- 시기: (희생장소 및 총탄바위)1951. 2. 9.~2. 11., (합동묘역)1954. 4. 5., (위령비)1960. 11. 18. * 거창사건 발생: 1951. 2. 9.~2. 11.

(3) 검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05.08.4.): '박산합동위령비' 2005년 제3차 근대분과위원회 등록 검토: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1.8.19.):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남도→문화재청)
 - 신청대상 확대하여 재신청(희생장소, 합동묘역 추가)
- ('22.5.10.):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5.16.):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경상남도)
 - 요청사항: 등록구역은 실제 사건발생 장소로 한정하여 조정
- ('22.10.5.): 보완자료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등록면적 수정 제출(14,569m²→4,380m²)
- ('22.10.18.):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경상남도)
 - 요청사항: 등록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
- ('22.12.6.): 보완자료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23.5.24.):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경상남도)
 - 요청사항: 조정 등록구역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
- ('23.6.20.): 보완자료 제출(경상남도→문화재청)
 - 조정 등록구역 중 일부 소유자 비동의로 신청면적 축소(4,380m²→3,414m²)

11. 「인천 조흥상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인천 조흥상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7.2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1.12.)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특)문화유산국민신탁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인천 조흥상회
-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8, 8-1
- 수량·면적: 3동, 건축면적 198.347m²(대지면적 347m², 연면적 275.039m²)
- 층수(높이): 지상2층
- 구조: 목조, 연와조
- 시기: 1956년 건립(추정)

(3) 검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2.7.27.):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인천광역시→문화재청)
- ('23.1.12.):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1.16.):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인천광역시)

* 요청사항

- ① 건물의 구체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가옥의 원형과 증축 부분의 구분을 위한 근거 자료
 - ③ 건축물대장·건물등기에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을 위한 근거 자료
 - ④ 제출 자료 중 건축 연혁과 고증자료 등에서 내용이 불일치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연혁을 알 수 있는 자료(필요시 폐쇄대장)
 - ⑥ 상점 및 가옥의 준공 시점 확인
 - ⑦ 등록신청 면적 중 불법 확장된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
- ('23.6.28.): 보완자료 제출(인천광역시→문화재청)

12.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복원정비(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의 복원정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지붕 및 입면 등을 복원하고자 하는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영광군수
- (2) 대상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재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17.10.23. 등록)
 -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로2길 64-1 (묘량면)
 - 주요 보수이력 및 현황
 - (1936) 건립: 초가 5칸
 - (1955) 지붕을 함석으로 개량
 - (1983) 온돌을 마루로 개조, 불단 개조, 전면 새시 설치 등
 - (2023 현재) 지붕 슬레이트 기와, 동쪽 끝 칸 일부 증축, 기단부 시멘트 바름, 아궁이 철거 등 변형되어 있음. 지붕 누수 및 주요 구조재 충해와 기둥 좌굴 현상 등이 보임
- (3) 사업 추진경과
 - (2020) 정기조사 [E(수리) 등급]
 - (2022) 정밀안전진단 실시 [종합결과 : F]
 - 요약) 일부 틈보와 중도리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목재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었음. 초석 기단 문힘, 기둥 및 벽체 인접 부재 이격, 배수 불량, 기둥 기울기 변형 및 좌굴 등 전체 가구 및 결구부 손상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해체 보수가 필요함
 - (2023.2.) 보수정비 해체보수 설계 교부 [사업예산: 30,000천원]
 - (2023.6.21.) 복원정비로 지침변경 신청

(4) 검토사항 : 1936년 기준으로 하는 복원정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붕: 골슬레이트 → 초가
- 기둥 및 벽체: 전면 우측 증축부 및 새시 철거 후 방 복원
- 내부: 천장 노출 등
- 기타: 아궁이 노출 및 굴뚝 복원

보고 사항

13.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대한매일신보」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대한매일 신보 (2012-3)	○○○○○ ○○○○○	○○○○○ ○○○○○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 (2) 허가 내용 ○ 내 용 : 대한매일신보 보존처리 ○ 수 량 : 900매 총4,941매=2,819(완료)+900(당해)+1,222(예정) (3) 허가(수행)기간 : '23.6.23.~12.20. (4) 추진경과 ○ 문화재 등록 '12.10.17. ○ 정기조사('18, '20) E(수리) 등급 ○ 보존처리 내역('17~'22/6년간)	허가	'23.6.23.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수</th> <th>신청일</th> <th>허가통지일</th> <th>보존처리기간</th> <th>수량</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17.4.26.</td> <td>'17.5.31.</td> <td>'17.7.25.~12.15.</td> <td>298매</td> </tr> <tr> <td>2차</td> <td>'18.3.12.</td> <td>'18.5.9.</td> <td>'18.7.20.~12.19.</td> <td>304매</td> </tr> <tr> <td>3차</td> <td>'19.6.26.</td> <td>'19.7.26.</td> <td>'19.8.1. ~12.18.</td> <td>298매</td> </tr> <tr> <td>4차</td> <td>'20.5.25.</td> <td>'20.6.18.</td> <td>'20.7.1. ~12.15.</td> <td>644매</td> </tr> <tr> <td>5차</td> <td>'21.5.21.</td> <td>'21.5.28.</td> <td>'21.6.14. ~ 12.15.</td> <td>610매</td> </tr> <tr> <td>6차</td> <td>'22.5.27.</td> <td>'22.6.24.</td> <td>'22.6.24. ~ 12.20.</td> <td>665매</td> </tr> <tr> <td colspan="4">합 계</td> <td>2819매</td> </tr> </tbody> </table>	차수	신청일	허가통지일	보존처리기간	수량	1차	'17.4.26.	'17.5.31.	'17.7.25.~12.15.	298매	2차	'18.3.12.	'18.5.9.	'18.7.20.~12.19.	304매	3차	'19.6.26.	'19.7.26.	'19.8.1. ~12.18.	298매	4차	'20.5.25.	'20.6.18.	'20.7.1. ~12.15.	644매	5차	'21.5.21.	'21.5.28.	'21.6.14. ~ 12.15.	610매	6차	'22.5.27.	'22.6.24.	'22.6.24. ~ 12.20.	665매	합 계				2819매		
차수	신청일	허가통지일	보존처리기간	수량																																									
1차	'17.4.26.	'17.5.31.	'17.7.25.~12.15.	298매																																									
2차	'18.3.12.	'18.5.9.	'18.7.20.~12.19.	304매																																									
3차	'19.6.26.	'19.7.26.	'19.8.1. ~12.18.	298매																																									
4차	'20.5.25.	'20.6.18.	'20.7.1. ~12.15.	644매																																									
5차	'21.5.21.	'21.5.28.	'21.6.14. ~ 12.15.	610매																																									
6차	'22.5.27.	'22.6.24.	'22.6.24. ~ 12.20.	665매																																									
합 계				2819매																																									

14.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현상변경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3.6.27.(화) 13:00 / 정부대전청사 1동 9층 대회의실
- 참석 위원 : ○○○, ○○○, ○○○, ○○○
- 회의 안건 :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현상변경(독립의 전당 건립)
- 회의 결과 : 조건부가결

다. 진행경과

- '23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3.3.28.) : 보류
 - 문화재를 고려하여 규모·형태 등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
 - '23년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 5. 23.) : 조건부 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함
 - 위원구성 : ○○○, ○○○, ○○○, ○○○, ○○○
 - '23년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심의('23. 6. 13.) : 보류
 - 독립문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연결되는 주동선을 고려하여 건물배치 재검토
 - 문화재경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에서부터 진입 시 보여지는 눈높이 상의 투시도 제시
- ※참석 위원 : ○○○, ○○○, ○○○, ○○○

라. 보고내용

- 소위원회 심의 결과

내 용	검토의견
(1) 신청인 : 국가보훈처장 (2) 대상문화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63.01.21. 지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사적 「서울 독립문」 ('63.01.21. 지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 조건부가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 및 건물색채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

내 용		검토의견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이격거리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격 「서울 독립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 세부내용 : 독립의 전당 건립 - 주요시설 : 위패보안실,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구분	재심의('23.5.)	소위원회('23.6)	소위원회(금회)
건축면적	1,084.34㎡	1,063.63㎡	1,029.57㎡
연면적	3,130.46㎡	3,132.51㎡	3,055.13㎡
규모 /최고높이	지상 1층, 지상 1층 / 8.4m	지상 1층, 지상 1층 / 8.4m	지상 1층, 지상 1층 / 8.4m

○ 행정처분사항 결과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통지('23. 6. 28.) : 조건부 허가

- 허가조건 : 착공신고 전 조경 및 건물색채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